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42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김선교·김정재·이헌승

김성원 • 박충권 • 김예지

윤상현 · 김소희 · 이인선

송석준 • 박수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횡행하고 있어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재·처벌수준이 낮고, 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 화하며, 불법대부계약의 불법이득 이자에 대해서도 제한하여 현행 20% 수준의 이자 제한 규정을 상사법정이율(6%)로 낮추는 등 불법사 금융문제를 해소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9 조의3, 제9조의4,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



법률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 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서민등 금융상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표현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제9조의4의 제목 중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를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를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미등록대부업자의"를 "불법사금융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 법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 및 연체이자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경우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본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제1항"을 "제8조"로,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을 "제9조의3제1항제3호를"로, "신용공여를 받은"을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광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의2제4항을"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로,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을 "신용공여를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3항을"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로,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을 "신용공여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 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3.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 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 4.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 5.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받은 자
- 6.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 7.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8.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 9.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를 "제9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 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 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 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 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 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지 등) ①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 3.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ㅣ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 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거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서민 는 광고 행위

<신 설>

② (생략)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 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 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 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 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을 다는 자(이하 합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급	금융상품으로	오인 •	혼동
하게	표현하는		_

- 4.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 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광고 행위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의4(<u>불법시</u>	- 금융 역	업자로	부터
<u>의</u>	채권양수 •	추심	금지	등)
1		<u>불법</u>	사금융	업자
로브	<u> 부터</u>			

(2)	물법사금융중개
업자로부터	

- ③ (생략)
-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 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 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 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신 설>

<신<u>설></u>

-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19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현행과	같음)
(U)	(1,01	$\mathbf{E} \mathbf{D}$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제하) ① ----------<u>「상법」 제54조에 따</u> 른 상사법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 및 연체이자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 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부업 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본 다.

-----2억 원-----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8조----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를 받은---

-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 <u>용한</u> 자
-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 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 증을 대여한 자
-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를 받은 자
-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 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 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

5. <u>제9조의3제1항제3호를</u>
<u>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u>
하여 광고를 한
②
<u>5년</u>
<u>5천만원</u>
1. <u>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u>

----신용공여를 한---

<삭 제>

----신용공여를 받은---

<삭 제>

<삭 제>

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 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 를 한 자

-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 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

- 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 증을 대여한 자
-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사용한 자
- 3.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 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 4.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 5.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 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 6.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 7.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8.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신 설>

-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8. (생략)
 - 9. <u>제9조의3제1항 각 호의</u> 행위 를 한 자
 - 10. ~ 12. (생략)
 - ②·③ (생 략)

- 9.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 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21조(과태료) ① -----
 - 1. ~ 8. (현행과 같음)
 - 9. <u>제9조의3제1항제1호, 제2호</u> <u>또는 제4호의----</u>
 - 10. ~ 12.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